

멸종위기 야생생물 []포획 []이식 []보관
[]채취 []가공 []훼손 허가신청서
[]방사 []유통 []고사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상호(성명)	연락처
	주소	
	조사 또는 사업명(해당하는 경우)	

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보	학명	멸종위기 등급	수량	목적·용도

포획·채취 시 추가사항	면적	m ²
	포획·채취방법	

방사·이식 시 추가사항	장소	시기
	방사·이식방법	

가공 시 추가사항	가공 명세	
	입수 경위	

유통 시 추가사항	매수인 성명	입수경위
	매수인 주소	

훼손·고사 시 추가사항	장소	
	훼손·고사방법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[]포획 []채취 []방사 []이식 []가공 []유통 []보관 []훼손 []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역환경청장
(지방환경청장)

귀하

신청인 제출 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

신청인 제출 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(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2.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·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3. 전시에 관한 계획서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4.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5. 질병의 진단·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6.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,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목적·용도란에는 포획·채취·방사·이식·가공·유통·보관·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